

인천지방법원 2023. 11. 15 선고 2023가단569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변 론 종 결 2023. 11. 1.

판 결 선 고 2023. 11. 15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에게,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6. 9. 13. 접수 제1383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1996. 9. 13. 접수 제13835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중 피고 B는 각 3/15, 피고 C, D, E, F, G, H은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, C, D, F, H에 대하여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E, G에 대하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상욱

별지